

우리 나라의 비엔나 協約 批准의 妥當性

崔 竣 璿*

-
- I. 머리말
 - II. 契約의 成立
 - III. 賣渡人의 義務
 - IV. 賣渡人의 義務違反에 대한 買受人의 救濟
 - V. 契約을 不履行한 賣渡人의 權利
 - VI. 買受人의 義務
 - VII. 買受人의 義務違反에 대한 賣渡人의 救濟
 - VIII. 兩當事者에게 共通되는 規定
 - IX. 危險의 移轉
 - X. 結 言
-

I. 머리말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가 제정한 초안을 기초로 1980년에 성립된 비엔나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Vienna Convention)은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¹⁾ 지금까지 40

*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1) 이 협약에 관하여는 외무부 국제기구 조약국 집무자료 82~47, UN 국제상품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 金建植, “총설: 비엔나 協約의 歷史, 現狀, 將來,” 林泓根·李泰熙,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상의 諸問題, 三知院, 1991, 18면 이하; 高範俊,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 大韓商事仲裁院, 1983; Schlechtriem, Peter, *Einheitliches UN-Kaufrecht, Das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internationale Warenkaufverträge - Darstellung und Texte*, Tübingen, 1981; Herber, R., *Gedanken zum Inkrafttreten des VN-Kaufrechtsübereinkommens: RIW/AWD 1987*, pp. 340~342; Schlechtriem (Hrsg.), *Einheitliches Kaufrecht und nationales Obligationenrecht*, Baden-Baden, 1987; von Caemmerer/Slechtriem (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Kaufrecht*, München, 1990 등 참조.

개국 이상이 가입하였다.²⁾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소련 등이 이미 가입하였고, 가입국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 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분들, 특히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우리 나라를 수출국으로 보고 있다. 즉, 매도인 국가라는 것이다.³⁾ 따라서 비엔나협약도 매도인의 입장에서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비엔나협약은 전체적으로 매수인, 즉 수입국에 유리한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이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들 한다. 어느 만큼이나 그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이곳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조문은 무엇이고 불리한 조문은 무엇인지 보기로 한다.

II. 契約의 成立

1. 契約의 方式

본래 매매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⁴⁾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계약의 자유가 인정된다. 계약자유 원칙은 비엔나협약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계약자유 원칙이란 계약의 체결, 상대방 선택, 계약의 내용 및 방식의 자유를 말한다.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은 자유이다. 다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유보선언을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선언을 한 나라에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다.⁶⁾ 이러한 유보선언을 한 계약국과 그렇지 않은 계약국간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

2)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1995, p. 125.

3)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은 이곳에서 논의하지 아니한다. 특히 1996년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도 할 수 있다.

4) 李均成, “國際賣買契約의 成立”, 林泓根·李泰熙 共編, 前掲書, 88면.

5) 협약 제 96조. 이는 서면의 형식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제국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Schlechtriem, *Uniform Sales Law - The UN-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6, p. 47.

6) 협약 제 12조.

여 지정된 준거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유보선언을 한 경우라도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되므로⁷⁾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請 約

(1) 到達主義

협약상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⁸⁾ 이 점은 우리 민법과 같다.⁹⁾

(2) 請約의 撤回

청약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 도달과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철회할 수 있다.¹⁰⁾ 이에 비하여 우리 민법은 피청약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¹¹⁾ 그러나 청약의 효력발생 전인 이상 사정변경에 따라 승낙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는 계약의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¹²⁾ 통설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 이것이 매도인에게 특히 불리할 것도 없다.

(3) 請約의 取消

협약상 계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¹³⁾ 다만 승낙기간이 지정된 경우, 취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 취소불능임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¹⁴⁾

우리 법에는 청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과 권리남

7) 협약 제 13 조.

8) 협약 제 15 조.

9) 민법 제 111 조 제 1 항. 이은영, 채권각론, 1989, 86 면.

10) 협약 제 15 조 제 2 항.

11) 민법 제 527 조.

12) 崔竣璿, 國際去來法, 1996, 135 면.

13) 협약 제 16 조 제 1 항.

14) 협약 제 16 조 제 2 항.

용의 금지의 원칙에¹⁵⁾ 따라 청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위 협약의 규정이 골신의·성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이 매도인에게 특히 불리할 것도 없다.

(4) 請約의 拒絶

청약에 대한 거절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¹⁶⁾ 이것은 우리 법의 해석에서도 같다.

(5) 請約의 失效

청약은 승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을 승낙기간으로 본다.¹⁷⁾

우리 민법에서도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¹⁸⁾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¹⁹⁾ 다만 상법에서는 이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²⁰⁾ 결국 우리 법률과 협약의 규정에 차이가 없다.

3. 承 諾

(1) 承 諾 通 知

청약에 대한 무응답이나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²¹⁾ 따라서 청약에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해 승낙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점은 우리 법에서도 당연하다. 한편 우리 상법에서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者 간의 청약에 대한 무응답은 승낙으로 간주된다.²²⁾ 그러나 이러한 규

15) 민법 제2조.

16) 협약 제17조. *Anson's Law of Contract*, 25th ed., 1979, p. 56.

17) 협약 제18조 제2항.

18) 민법 제528조 제1항.

19) 민법 제529조.

20) 상법 제52조 제1항.

21) 협약 제18조 제1항.

정을 국제거래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승낙의 통지에 관하여는 우리 법과 차이가 없다.

(2) 承諾의 效力發生時期

협약상 승낙은 그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인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²³⁾ 구두의 청약은 즉시 승낙하여야 한다.²⁴⁾

우리 민법상 격리자간의 거래에서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²⁵⁾ 이 점은 협약과 내용이 같다. 그러나 상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택한 점이 민법상의 도달주의²⁶⁾에 대한 특색이다).²⁷⁾ 그러므로 상법이 적용될 경우, 발신주의에 의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뿐 아니라 협약과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므로 협약이 도달주의를 취하였다고 해서 특히 문제될 것도 없다.

한편 우리 상법에서는 대화자간의 청약, 즉 구두의 청약은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²⁸⁾ 민법에서도 해석상 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고 본다.²⁹⁾ 여기서 대화자간이란 지리적 원근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전화 등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즉시 了知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구두의 청약과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없다.

4. 契約의 成立

(1) 原則

협약상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때 계약이 성립된다.³⁰⁾ 실무계에

22) 상법 제 53 조. 李範燦·崔竣璠, 商法概論, 1997, 143 면.

23) 협약 제 18 조 제 2 항.

24) 협약 제 18 조 제 2 항.

25) 민법 제 528 조 제 1 항.

26) 민법 제 529 조 참조.

27) 상법 제 52 조 제 1 항.

28) 상법 제 51 조.

29) 郭潤直, 債權各論, 1996, 67 면.

서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하여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격지자간에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효력은 청약자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다.³¹⁾ 그런데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는데(도달주의),³²⁾ 계약의 성립은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도록 되어 있어서(발신주의)³³⁾ 서로 모순이다. 다수설에 의하면 승낙은 원칙적으로 발신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나, 승낙기간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이 경우 계약은 승낙의 不到達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발송시에 성립한다고 한다. 이처럼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우리 민법에 의한 해석이 조문의 불비로 현실과 맞지 않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우리 민법의 조문이 국제계약에 적용될 리도 없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承諾이 延着된 경우

협약상 청약자가 청약이 실효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구두로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연착된 승낙이라도 유효한 승낙으로 본다.³⁴⁾

우리 민법과 상법은 다 같이³⁵⁾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 측에서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든 유효한 승낙으로 보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3) 變更을 가한 承諾

청약조건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³⁶⁾ 이에 대하여는 다시 승낙하지 아니하

30) 협약 제 18 조 및 제 23 조.

31) 민법 제 528 조 제 1 항.

32) 민법 제 529 조.

33) 민법 제 531 조.

34) 협약 제 21 조 제 2 항.

35) 민법 제 530 조 ; 상법 제 52 조 제 2 항.

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경을 가한 승낙도 그것이 중요부분(예컨대 가격, 대금, 지급, 수량, 품질, 인도시기, 인도장소, 책임의 범위,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변경이 아닌 한 승낙이 된다.³⁷⁾ 비엔나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하여 계약의 성립을 쉽게 한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³⁸⁾

실무계에서는 청약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이 적용될 경우, 중요하지 아니한 청약조건을 변경한 승낙을 거절하려면 즉시 그 변경된 승낙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송하여야 계약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5. 口頭에 의한 契約의 變更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수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나,³⁹⁾ 이 경우에도 이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범위내에서는 서면합의 수정규정을 주장할 수 없다.⁴⁰⁾

우리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무계에서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 예컨대 구두합의에 의한 계약수정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관행이다.

협약은 계약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에 대하여 이를 신뢰한 당사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을 문서화하는데 서투른 우리 국민에게 적합한 규정이다. 굳이 구두의 합의를 무효로 할 의도라면 위의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6) 협약 제 19 조 제 1 항.

37) 협약 제 19 조 제 2 항.

38) 민법 제 534 조.

39) 협약 제 29 조 제 2 항 본문.

40) 협약 제 29 조 제 2 항 단서.

Ⅲ. 賣渡人의 義務

1. 所有權移轉義務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이다.⁴¹⁾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 제4조 제6항은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문제는 협약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계약의 준거법이 요구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현실적 인도나 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서류의 인도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物品引渡義務

(1) 意義

물품인도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이다.⁴²⁾ 물품인도는 현실적 인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개정,⁴³⁾ 반환청구권의 양도와⁴⁴⁾ 같은 관념적 인도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 이와 같은 관념적 인도방법은 흔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품인도의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의무가 소유권이전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物品引渡時期

물품인도시기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계약의 해석 또는

41) 협약 제30조. 李泰熙,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상의 當事者의 義務,” 林泓根·李泰熙 共編, 前掲書, 111면.

42) 협약 제30조.

43) 민법 제189조.

44) 민법 제190조.

관습 등에 의하여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⁴⁵⁾ 우리 민법에서는 인도시기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 인도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인도시기가 우리 민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단축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매도인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계약에서 계약이행시기를 정하지 않는 그러한 계약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3) 物品引渡場所

물품인도장소에 관하여 약정 또는 확립된 관습이 있으면 약정장소에서 인도하거나 확립된 관습에 따라 인도하면 된다. 매매계약의 내용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도장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1의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⁴⁶⁾ 이는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아래 둬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우리 민법의 해석과는 다르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이 물품인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물품매매의 당연한 결과이다. 국제매매계약에서 물품인도장소를 정하지 않는 그러한 계약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3. 書類引渡義務

매도인은 계약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⁴⁷⁾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기,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여⁴⁸⁾ 서류인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⁴⁹⁾

45) 협약 제 33 조 c 호.

46) 협약 제 31 조 a 호.

47) 협약 제 30 조. 李泰熙, 前掲論文, 林泓根·李泰熙 共編, 前掲書, 116 면.

48) 협약 제 34 조.

49) 郭潤直, 前掲書, 223 면.

4. 契約適合義務

(1) 意義

협약은 물품의 하자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⁵⁰⁾ 우리 민법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는 가운데⁵¹⁾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는 제 580 조와 제 581 조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고, 상법에서는 제 69 조에 한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협약상 매도인은 계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량, 품질, 종류의 물품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식으로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하고,⁵²⁾ 제 3 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목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⁵³⁾ 이는 영미법상 담보(warranty)에 관한 규정 및 대륙법계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다만 협약은 이를 ‘물품의 계약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 ‘물품의 계약부적합’ 또는 ‘물품적합성의 결여’(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등으로 표현한다.⁵⁴⁾

(2) 契約適合義務의 法的 性質

협약은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순수한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의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점과 차이가 있다.⁵⁵⁾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문제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3) 物品의 種類와 品質에 대한 擔保責任

물품은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⁵⁶⁾ 이는 우리 민법상 종류채권에 관하여 품질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과⁵⁷⁾ 큰 차이가 없다.

50) 협약 제 35 조 이하 제 44 조까지.

51) 제 570 조부터 585 조까지.

52) 협약 제 35 조 제 1 항.

53) 협약 제 41 조.

54) 李泰熙, 前掲論文, 117 면.

55) 李泰熙, 前掲論文, 119 면; 崔竣瑋, 國際去來法, 147 면.

56) 협약 제 35 조 제 2 항 a 호.

종류와 품질에 관한 실무계의 관행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매물품의 특정목적부적합은 그러한 특정한 목적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경우, 즉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⁵⁸⁾ 이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영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묵시적인 특정목적 적합성은 배제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物品의 契約不適合에 대한 賣渡人의 故意·過失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던(과실) 사실에 대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⁵⁹⁾

이에 비하여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⁶⁰⁾ 즉, 매도인의 고의의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과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무한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므로 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점은 매도인에게 불리하다.

(5) 權利適合義務

권리적합의무로서 매도인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⁶¹⁾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는 지적소유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과 다르다.⁶²⁾

57) 민법 제 375 조 제 1 항.

58) 협약 제 35 조 제 2 항 b 호.

59) 협약 제 40 조.

60) 민법 제 854 조.

61) 협약 제 41 조.

62) 崔坡璠, 前掲書, 149 면.

IV. 賣渡人의 義務違反에 대한 買受人의 救濟

1. 序言

우리 민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제 568 조(매매의 효력)에서 통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협약은 그 제 45 조에서 구제제도에 대한 일반적 총괄규정을 두고 제 46 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방안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⁶³⁾

실무계에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대체물을 인도할 것인가 수선을 할 것인가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매도인이 판단한다. 이에 비하여 비엔나협약에서는 이 경우 買受人에게 선택권을 주어, 계약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청구권, 대체물품인도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賣渡人에게 행사할 수 있다.⁶⁴⁾ 따라서 계약에 매도인이 대체물품의 인도 또는 수선을 선택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履行請求權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래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⁶⁵⁾ 이는 우리 법에서도 당연한 것이다.⁶⁶⁾

3. 代替物引渡請求權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적합성의 결여가 계약의 본질

63) 趙慶根, “國際物品賣買契約에 있어서 當事者의 權利救濟,” 林泓根·李泰熙 共編, 前揭書, 171 면.

64) 협약 제 46 조.

65) 협약 제 46 조 제 1 항.

66) 崔垞璿, 前揭書, 157 면.

적인 위반이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⁶⁷⁾ 우리 민법에서도 종류채권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代替物引渡請求權을 인정한다.⁶⁸⁾ 우리 민법은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를 구별하여 취급 하는데 비하여 협약은 불특정물 매매를 중심으로 규정하므로 대체물인도가 비교적 쉽다. 이는 국제물품매매의 대상이 대부분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瑕疵補修請求權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補修請求가 모든 상황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한 때에 買受人은 瑕疵補修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⁶⁹⁾

우리 民·商法에서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⁷⁰⁾ 補修請求權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도 해석상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실무계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5. 追加期間指定權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追加期間을 지정할 수 있다.⁷¹⁾ 우리 민법 제 544 조에서도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6. 契約解除權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①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67) 협약 제 46 조 제 2 항.

68) 민법 제 581 조 제 1 항·제 2 항, 제 575 조 제 1 항.

69) 협약 제 46 조 제 3 항.

70) 민법 제 580 조, 제 575 조.

71) 협약 제 47 조 제 2 항.

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매수인이 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③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밝힌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⁷²⁾ 이 밖에 협약에는 분할이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⁷³⁾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⁷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⁷⁵⁾ 정하여 위 ①과 내용이 같다. 또 민법 제 544 조에서도 이행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정하여 협약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분할이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우리 법률에 규정이 없는 반면, 민법 제 545 조의 정기행위의 해제나, 상법 제 68 조의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에서의 解除擬制 등은 협약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는 협약의 규정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7. 代金減額請求權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의 引渡時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물건이었다면 引渡時에 가질 수 있었던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⁷⁶⁾

우리 민법은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⁷⁷⁾ 물건의 하자에 대한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해제나 대체물인도 및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도 명문의 규정만 없을 뿐 이를 금하는 것은

72) 협약 제 49 조 제 1 항.

73) 협약 제 73 조.

74) 협약 제 73 조.

75) 민법 제 575 조 제 1 항.

76) 협약 제 50 조.

77) 민법 제 572 조, 제 574 조.

78) 민법 제 580 조, 제 581 조.

아니다. 결국 協約의 규정과 우리 민법의 규정은 큰 차이가 없다.

8. 損害賠償請求權

(1) 損害賠償額의 算定

協約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당해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해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의 것임을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하는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⁷⁹⁾

우리 민법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 내지 후속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⁸⁰⁾

이와 같이 協約은 예견가능성에 입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비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사하다. 다만 協約에서는 예견가능유무의 판단시점을 계약체결시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채무불이행시보다 앞선 시점인 계약체결시에 특별한 손해를 예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協約에 의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2) 損害賠償額의 豫定

한편 우리 민법은 제 398 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그것이 부당히 과대한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協約에서는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면 된다.

79) 協約 제 74 조.

80) 민법 제 393 조.

V. 契約을 不履行한 賣渡人의 權利 (賣渡人의 瑕疵補完權)

비엔나 협약은 그 법률정책으로서 계약유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일례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이다.⁸¹⁾ 즉, 비엔나 협약은 계약자유 원칙을 존중하되 이미 성립된 계약은 끝까지 이행되도록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와 독일, 프랑스의 매매법은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하자보완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매도인이 하자있는 물건으로써 계약을 이행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제거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 협약은 英美法의 영향을 받아, 하자있는 물건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행기 전 또는 이행기 후에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⁸²⁾ 이는 매도인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이다.

매도인이 인도하여야 할 날 이전에 목적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경비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날까지 흠결있는 부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대체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목적물의 적합성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保有한다.⁸³⁾ 이것이 바로 이행기 도래 전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이다.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행사를 거절한 매수인은 계약부적합으로 인한 항변권, 즉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⁸⁴⁾

81) 崔埈璠, “賣渡人의 第二의 履行提供權”, 『韓國財産法學會誌』, 제9권 제1호, 1992, 73~97면 참조.

82) 협약 제37조, 제48조.

83) 비엔나 협약 제37조.

84) Bianca/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1987, Art. 37. 3.2. 참조.

또한 매도인은 불합리한 지체가 되지 않고, 또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이 선급한 경비를 매도인이 상환함에 관한 불안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할 날 이후에도 제 49 조의 유보아래 자기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⁸⁵⁾

VI. 買受人의 義務

1. 代金支給義務

대금지급의무는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⁸⁶⁾ 협약은 대금결정방법, 지급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관행에 맡기고 있다. 이는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같다.

2. 引渡受領義務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⁸⁷⁾ 이에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관련한 협력의무도 포함된다.⁸⁸⁾ 우리 민법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같다.

3. 物品檢査 및 通知義務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단기간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⁸⁹⁾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 에 대하여 부적합의

85) 협약 제 48 조.

86) 협약 제 53 조.

87) 협약 제 53 조.

88) 협약 제 60 조.

89) 협약 제 38 조 제 1 항.

성질을 명확히 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당해 부적합의 사실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⁹⁰⁾ 위 통지는 경우의 여하를 막론하고 물품이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⁹¹⁾

여기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란 영미법상의 '합리적인 기간 내' 또는 우리 상법상의 '지체없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 상법의 경우에도 매수인은 물품수령 즉시 하자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시 발견된 하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발견, 통보하여야 하자보증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⁹²⁾ 그리고 그 권리는 상사시효로 5년의 시효에 걸린다.⁹³⁾

거래관행에 의하면 물품에 따라 다르나 보통 계약에 물품인도일로부터 1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을 계약에 명시하여 장기간(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은 협약에 의하면 매도인에게 다소 불리하다.

4. 引渡遲延時의 契約解除權

매수인은 인도지연의 경우 인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합리적 시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⁹⁴⁾

그러나 현재의 거래관행을 보면, 일단 인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연되었던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에는 지연손해배상만 인정한다. 이 점에서 협약에 의하면 매도인에게 다소 불리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도지연이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비례한 손해배상예정금(liquidated damages)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90) 협약 제 39조 제 1항.

91) 협약 제 39조 제 2항.

92) 상법 제 69조.

93) 상법 제 64조.

94) 협약 제 49조 제 2항 a호.

5. 物品代金支給과 買受人의 物品檢査機會

매수인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⁹⁵⁾

그러나 거래의 관행을 보면 L/C 나 D/P 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 별도의 물품검사없이 L/C 나 D/P 계약에서 요구하였던 서류 및 환어음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구매여 물품검사기회를 가지고 싶으면 선적 전에 검사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D/A나 T/T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 물품의 인도 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은 당연히 대금지급전 물품검사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협약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협약의 규정은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금지급의 구조로 인하여 큰 의미는 없는 규정이 되었다.

VII. 買受人의 義務違反에 대한 賣渡人의 救濟

매수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행청구권,⁹⁶⁾ 추가기간지정권,⁹⁷⁾ 계약해제권,⁹⁸⁾ 물품명세확정권⁹⁹⁾ 등이 인정된다. 이 대부분은 매도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공통되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물품명세확정권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 규격 등 기타 특징에 대하여 特定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청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특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특정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95) 협약 제 58 조 제 3 항.

96) 협약 제 62 조.

97) 협약 제 63 조.

98) 협약 제 64 조.

99) 협약 제 65 조.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수인은 다른 특정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을 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이 행한 특정이 구속력을 갖는다.¹⁰⁰⁾ 이는 매수인이 추후 계약을 파기하고자 물품의 특정을 미룰 때 매도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우리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VIII. 兩當事者에게 共通되는 規定

비엔나 협약은 제3편 제5장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⁰¹⁾ 이들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에도 특히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규정이다. 그 중에 일방 당사자가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¹⁰²⁾ 매도인을 위하여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상법의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약정이자가 없는 한 민사이자는 연 5%, 상사이자는 연 6%이다. 그러나 거래관행에 의하면 대금의 지급지체시의 지체이자(손해배상예정금(liquidated damages))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체이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이자를 청구하는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것이다.

매수인의 처지에서는 지연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규정을 두어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0) 崔坡璿, 前掲書, 161 면.

101) 趙慶根, 前掲論文, 202 면.

102) 협약 제 78 조.

IX. 危險의 移轉

위험의 이전(passing of risk)은 우리 민법 제 537 조·제 53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부담'을 動的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¹⁰³⁾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된다는 이른바 인도주의를 취하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Incoterms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

X. 結 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략 고찰하여 볼 때에 비엔나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우리 민법을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비엔나 협약의 규정은 매도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리하다는 것도 내용적으로는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은 전체적으로 매우 자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매도인에게 불리한 항목이 한 개 쯤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항목, 예컨대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이나 물품명세확정권과 같은 조문은 매우 유리하다.

(2)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보면 국제매매거래의 실무를 반영하여 이론적이

103) Günter Hager, *Gefahrtragung beim Kauf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1982 ; Choi, June-sun,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Gefahrtragsregeln im anglo-amerikanischen und im UN-Kaufrecht*, 1991.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민법 제 537 조).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 곧 급부를 종료하면 위험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의 이행은 동산의 인도으로써 완성된다(민법 제 188 조 제 1 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 538 조). 위험을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느냐 채권자(매수인)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위험부담문제(Gefahrtragung)를 靜的으로 파악한 것이고, 위험의 移轉問題(Gefahrübergang, Passing of Risk), 즉, 위험이 언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移轉하느냐 하는 것은 위험부담문제를 매매계약 이행과정의 각 시점에 연결시키는 動的인 고찰의 결과일 뿐 양자는 차이가 없다.

104) 협약 제 67 조.

아니어서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협약의 내용을 모르고 합리적인 정신과 신의성실에 따라서만 계약의 이행에 임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정서와 합치한다. 따라서 협약의 각 규정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를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약은 매매에 관하여서만 101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계약총칙이 26개조, 매매에 관한 조문은 32개조로서 전체가 58개조문밖에 되지 않는다. 상법에는 상사매매에 관하여 5개의 조문만이 있을 뿐이다. 도합 63개조이다. 나아가 우리 본문은 매우 축약되어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해석을 요하지만, 비엔나 협약은 아주 상세하게 풀어 쓰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다.

(3) 비엔나 협약 체결국간에는 협약이 국제매매에 관한 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체결국 간에는 매매법이 통일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미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거의 확립된 의무를 명시하여 통일하였으므로,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였다. 협약은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무역거래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이 국가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통일법을 채택함으로써 동일한 법률문화에 속하는 국민간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고,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의 진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협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있고,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상 준수되는 거래관행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에 적용되므로¹⁰⁵⁾ 협약만이 유일한 국제무역규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약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수십년간의 연구결과 탄생된 것이므로 오늘날의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法源임은 틀림없다. 이미 세계의 주요 교역국들이(일본은 제외하고) 이에 가입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을 알 수 있다.

(5) 우리 나라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협약은 민·상법의 특별법이 될 것이며 우리 민·상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105) 협약 제9조 제2항.

우리 민·상법의 관련조항의 보완작업도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姜二秀, 國際去來慣習論, 三英社, 1986.
- 高濬煥, 國際去來法論, 經進社, 1982.
- 國際去來法學會, 國際去來法研究 제 1 권 ~ 제 4 권, 1992~1995.
- 朴桓日, 國際去來法, 經營法務研究所, 1995.
- 徐憲濟, 國際去來法, 法文社, 1996.
- 梁暎煥·吳元奭, 貿易商務論, 三英社, 1993.
- 梁暎煥·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6.
- 吳元奭, 貿易契約論, 三英社, 1994.
- 林泓根·李泰熙 共編,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上的 諸問題, 三知院, 1991.
- 崔竣璿, 國際去來法, 1996.
- 崔竣璿, “國際去來法の 發展과 UN 統一賣買法の 最近動向”, 法學研究 제 15 집, 全北大法學研究所, 1988.
- , “賣渡人의 第二의 履行提供權”, 韓國財産法學會誌, 제 9 권 제 1 호, 1992.
- , “UN 國際物品賣買法上的 危險負擔 (I)”, 眩谷金斗煥教授華甲紀念論文集, 1994.
- , “UN 國際物品賣買法上的 危險負擔 (II)”, 商事法研究 제 12 집, 韓國商事法學會, 1993.
- 山本敬三, 國際取引法, 學陽書房, 1984.
- 山田鏝一·佐野寬, 國際取引法, 有斐閣, 1992.
- 松枝迪夫, 國際取引法, 三省堂, 1993.
- 松岡博, 國際取引と國際私法, 晃洋書房, 1993.
- 田中信幸, 國際取引法, 商事法務研究會, 1994.
- 絹卷康史, 國際取引法入門, 同文館, 1995.
- Bianca C.M./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1987.
- D.M. Day and Bernardette Griffi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Butterworths, 1993.

- Hans Van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 J.G. Merrill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1982.
- Peter Schlechtriem, *Einheitliches UN-Kaufrecht, Das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internationale Warenkaufverträge - Darstellung und Texte*, J.C.B. Mohr, 1981.
- Ralph H. Folsom · Michael Wallace Gordon · John A. Spanogle, J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rd ed., West Publishing Co., 1995.
- Ronald Charles Wolf, *A Guide to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with Sample Clauses*, Kluwer, 1995.
- Slechtriem (Hrsg.), *Einheitliches Kaufrecht und nationales Obligationenrecht*, Nomos, 1987.
- Uniform Commercial Code 1989 Official Text with Comments*, 11th ed., West Publishing Co., 1989.
- von Caemmerer · Schlechtriem (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Kaufrecht*, C. H. Beck, 1990.